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90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1. ○○청장
	2. ○○군수
피고1. 보조참가인	○○시장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 ○○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군수가 201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4. 원고와 피고 ○○군수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군수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3/4은 원고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4

1/4은 피고1.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의 3/4은 원고가, 1/4은 피 고 ○○구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3항 및 피고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 12. 10.부터 2012. 7. 16.까지 그 본점이 ○○구 ○○동 ○○-3 ○○빌딩 7층에 위치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 4.부터 2012. 5. 25.까지 시설대여용 차량 2,613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원고의 함양출장소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관 리법에 따른 등록을 마쳤으며,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 ○○군수(○○출장소를 관할 하는 ○○○○지사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았다)에게 취득세 합계 16,133,178,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구청장은 2012. 5. 24.부터 2012. 6. 5.까지 ○○출장소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장소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어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본 거지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이 사건 본점을 관할하는 서울특 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9. 10.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4

16,133,178,550원 및 가산세 5,081,797,4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이 사건 차량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위 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9. 26. 피고 ○○군수에게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군수는 2012. 10. 26.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그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 2 기재 취득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위 라.항 기재와 동일한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가리키는데, 원고의 ○○출장소를 사용본거지로 한 이 사건 차량 등록의 효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위 출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 ○○구청장의 이 사건 부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4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유관기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등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경상남도가 아니라면 피고 함양군수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취득세 납세지의 기준이 되는 '사용본거지'의 의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는 차량의 경우 '등록지'를 취득세 납세지로 하되, 다만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자동차등록령이 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면서 사용본거지의 관할 관청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자,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사용본거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단서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위 '사용본거지'에 관하여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4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사무소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동차 소유자가 이와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차량 취득에 관한 과세권의 귀속이 납세의무자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는 것을 막고, 차량이 실제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되는 곳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배분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장소라 하더라도 차량이 실제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되는 곳이 아니라면 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납세지로 인정될 수 없고, 이는 자동차 등록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다.

2)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

가) 사실인정

(1) 원고는 '○○ ○○군 ○○읍 ○○리 ○○-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출장소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 등록시에도 위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기재하였다.

(2) ○○구 공무원들이 2012. 5. 24. ○○출장소를 방문하였을 때, 위 주 소는 ○○군청 소재지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업장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 고, 그 후 ○○구 공무원들이 2013. 2. 28. 위 장소를 재차 방문하였을 때, 비로소 ○○군청 청사 뒤편에 리스회사들의 명패가 붙은 임시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 으나, 위 가건물 역시 잠긴 상태로 내부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나 차량 계약 관련 서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4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2014. 10. 22. 재방문 시에도 원고 직원이 위 가건물을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

(3) 원고는 ○○출장소에 대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하면서 종업원 수를 0명으로 기재하였다.

(4) 원고는, ① 이 사건 본점에서 리스차량에 대한 금융실행 승인, 차량에 대한 구입대금 지급, 금융중개에 따른 수수료 지급, 운용리스 자산 등재 및 리스보증금 등 회계처리, 리스료 수납 관리 등 차량취득관련 관리업무를 모두 처리하였고, ② 리스차량에 대한 구입대금, 차량등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인지대, 공채할인 등 일체 등록부대비용 역시 이 사건 본점에서 지급하였으며, ③ 이 사건 본점 영업팀에서는 리스차량과 관련된 상품 판매를 위해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를 관리하고, 이를 운용리스개설원가(이연부대비용수익)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리스차량 이용기간 내에 상각하여 비용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 을가 제4, 5,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소유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주된 보관·관리 또는 이용장소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시설대여업자로서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장소는 아무런 인적·물적 실체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오직 서류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반면에 이 사건 본점에서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4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료의 수납, 각종 비용 지출 및 회계장부 관리 등 원고가 시설대여업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차량관리 업무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음 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도가 아니라 이 사건 본점 소재지인 ○○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 부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본세 부분은 적법하다.

[피고 ○○군수는, 납세지 선택의 오류는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 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고자 한 입법취지,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으로 과오납 취득세의 부당이 득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은 0원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세법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4

있는 등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납세자에게 도저히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사실, 원고가 이미 피고 ○○군수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취득세 본세 전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조차도 2012. 11. 19. 유사 사건에서 시설대여용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기 등록된 사 용본거지(이 사건의 경우 경상남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취지로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 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처음부터 이 사 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거나, 약 161억 원에 이르는 취득세를 재차 피고 ○○청장에게 신고·납부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으므 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군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서○○청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14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